

[붙임 8] 공동방지시설 운영 제출서류

▣ 공동폐수처리시설(공동방지시설) 운영 제출서류

- 각 폐수배출기업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‘폐수배출시설설치’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진행 필수
- 폐수배출기업 2개사 이상 입주하여 최초 협의회 구성 후 ‘공동방지시설’ 운영 시 제출서류
 - 제출자 : 협의회 대표자
 - 제출시기 :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 진행시

1.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
2.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
3. 사업장별 원료사용량·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,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
4.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
5.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(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)
6.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(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·과태료·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포함)

※ 추후 공동폐수처리시설(공동방지시설) 운영 협의회 구성원 및 시설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필수